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86

발의연월일: 2023. 3. 13.

발 의 자:허종식・박찬대・박성준

어기구 • 한준호 • 김정호

김교흥 · 김민기 · 유동수

이성만 • 이동주 • 배진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시 피해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작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해 최근 소방청이 소재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 아질 수 있다고 공식 제기하는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방재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남.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설치,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이 때 미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방재 능력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

부터 제8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난연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미리 그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여부를 알릴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재료 등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동의 요청 및 동의 여부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의 지원) ① ~ ⑤ (생 략)	의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
	<u>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u>
	<u>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u>
	하는 경우 난연성능을 갖춘 시
	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
	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
	<u>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u>
	<u>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u>
	하는 경우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미리 그 시장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여부를 알릴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신 설>

른화재안전성능을확보하기위하여시설물의재료등에대한검토자료또는의견서를첨부할수있다.

8 제7항에 따른 동의 요청 및 동의 여부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